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및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미수채권관리 업무처리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4.10.17)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 나. 법률상 회수할 수 없는 당연상각 대상채권의 상각 시 전결권을 하향 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10월 3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김효정 차장 (hjki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92
- 팩스번호 : 0505-036-0550

- 붙임 1.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2.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2조(정의)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신설>	6.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신설
7. <신설>	7.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를 말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규정과의 적용관계 명확화 및 조위치 변경
제2장 미수채권의 관리	제2장 미수채권의 관리	
제8조(채권보전조치의 유보 및 해제)	제8조(채권보전조치의 유보 및 해제)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 중에 공사가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기한의 이익 상실</u>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 중에 공사가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상 용어와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제23조(강제집행 통지 등)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관계자 및 소유자의 주소와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최고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의 예정 통지를 하고 그 최고기간 경과 후에 착수한다. ②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의 상태, 이해관계인, 시가 등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3장 미수채권의 상각 및 상각후 미수채권 <u><신 설></u> <u><신 설></u>	제23조(강제집행 등)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관계자 및 소유자의 주소와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최고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의 예정 통지를 하고 그 최고기간 경과 후에 착수한다. ②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의 상태, 이해관계인, 시가 등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한다. <u>③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u> <u>④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3장 미수채권의 상각 및 상각후 미수채권 <u>제50조의2(당연상각)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점장 전결로 상각할 수 있는 미수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금액 상환이 완료된 채권</u> <u>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의 전부이행으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채권</u> <u>3. 채무관계자 전원이 면책 확정된 채권</u> <u>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u> <u>5. 채무관계자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규제해제된 채권</u> <u>부 칙(3)</u>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주택경매 예정 통지 규정 신설 이사회 의결사항 반영 부칙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u>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u>	

※ 내용 개정 조항 외 내규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비 조항은 전후대비표 기재 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미수채권의 관리	제3장 미수채권의 관리	
제1절 수관	제1절 수관	
제8조(미수채권의 등록 및 이수관) ① (생략) ②채권관리센터는 위탁관리유동화자산 미수채권 수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수관처리해야 한다. 1. 대출거래약정서 등 주요 채권원인서류 유무 2.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제19조의 환매사유 발생 여부 3. 양도계약, 채권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위반 여부 ③ ~ ④(생략) 제9조(미수채권의 환매)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검토결과 환매사유 또는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환매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제19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환매청구시 주택저당미수채권은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당금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재계산된 미수채권 잔존원금을 기초로 환매가액을 산정한다.	제8조(미수채권의 등록 및 이수관) ① (현행과 같음) ②채권관리센터는 위탁관리유동화자산 미수채권 수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수관처리해야 한다. 1. 대출거래약정서 등 주요 채권원인서류 유무 2. <u>주택저당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하는 환매사유 발생 여부</u> 3. 양도계약, 채권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위반 여부 ③ ~ ④(현행과 같음) 제9조(미수채권의 환매)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검토결과 환매사유 또는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환매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관리규정」 <u>제43조부터 제46조까지</u>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환매청구시 주택저당미수채권은 「유동화자산관리규정」 <u>제12조</u>제1항 본문에 따라 배당금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재계산된 미수채권 잔존원금을 기초로 환매가액을 산정한다.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제3절 재산조사	제3절 재산조사	
<u><신설></u>	<u>제14조의2(추심의 착수 통지)</u> ①제8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추심(재산조사 포함)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공사 소정양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의 착수 통지

현행	개정안	비고
	식> “추심착수 예정 통지서”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	신설
<신설>	제8절 강제집행	
<신설>	제63조의2(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주택 경매예정의 통지) ①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경매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그 기준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이 경우, 기준가격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주택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택경매 예정 통지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3. <u>채무조정</u>의 <u>요건과 요청 절차·방법</u> 4. <u>개인금융채무자가 주택경매 예정</u>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내용 5. 「<u>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u>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공사에 표시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에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통지가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주택경매예정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행	개정안	비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경매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공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에 정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 제13조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8절 채무의 조정	제9절 채무의 조정	
제66조(부동산 등의 회수실익)	제66조(부동산 등의 회수실익)	
① (생략) ②제1항의 물건가액은 채무조정 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물건가액은 채무조정 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	

현행	개정안	비고
내에 조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액과, 해당 물건이 법원 또는 관할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포함)에 의해 경매 또는 공매 중일 때에는 최종경매·공매의 유찰 또는 낙찰가격(다만,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통지 후 제1차 경매·공매 시행 전인 경우는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해당 부동산 등의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임의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기한의 이익 상실분 포함)에 따라 기 상환한 금액 제71조(분할상환 허용조건) ①채무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에 따라 약정해야 하며, 채무관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채무조정 없이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만을 위해 예상회수실익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제70조제1항에 의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1/2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내에 조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액과, 해당 물건이 법원 또는 관할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포함)에 의해 경매 또는 공매 중일 때에는 최종경매·공매의 유찰 또는 낙찰가격(다만,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통지 후 제1차 경매·공매 시행 전인 경우는 제1차 경매·공매의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부동산 등의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임의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분</u> 포함)에 따라 기 상환한 금액 제71조(분할상환 허용조건) ①채무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공사 소정양식></u> “채무의 승인 및 <u>채무조정서</u>”에 따라 약정해야 하며, 채무관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채무조정 없이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만을 위해 예상회수실익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제70조제1항에 의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1/2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상 용어와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2. 분할상환 약정은 [별지 제2호 서식]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u>분할상환 약정서</u>”에 따른다. 제74조(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u>기한의 이익 상실</u> 등) ①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u> 강제집행 등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 2.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기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 포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일까지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회수실익금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때 3. ~4. (생략) ②<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 통지 및 <u>기한의 이익 상실</u>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 통지(최고 포함)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u>기한의 이익 상</u>	2. 분할상환 약정은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u>채무조정서</u>”에 따른다.) 제74조(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등) ①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고</u> 강제집행 등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 2.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기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 포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회수실익금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때 3. ~4. (현행과 같음) ②<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 및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u>채무조정</u>	

현행	개정안	비고
실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1호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 상실</u> 처리하고 개별 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3. 제2호의 반송사유가 이사(주소변동)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이후 변동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제5조제2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u>기한의 이익 상실</u>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 통지를 하는 때에는 <u>기한의 이익 상실</u>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 등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기 체결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u>기한의 이익이 상실</u>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u>기한의 이익을 상실</u>시킨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④<u>기한의 이익을 상실한</u> 채무관계자가 <u>기한의 이익 상실</u>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과 당초의 분할상환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u>기한의 이익을 상실한</u>	<u>합의의 해제</u>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1호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하고 개별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3. 제2호의 반송사유가 이사(주소변동)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이후 변동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u>채무조정서</u>” 제5조제2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를 하는 때에는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 등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기 체결한 “채무의 승인 및 <u>채무조정서</u>”에 대한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u>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한</u>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④<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u> 채무관계자가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u>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과 당초의 분할상환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가 해</u>	

현행	개정안	비고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사에 알리지 않은 재산의 회수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제75조(분할상환 중 발견재산에 대한 업무처리) ①분할상환(제71조제3항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제외) 중인 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 있는 재산을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u> 발견재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 ④ (생략) ⑤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금액을 초과하는 회수실익가액 이상을 추가로 상환(분할상환 포함)하는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u> 아니하고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한다. 제77조(채무조정한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① (생략) ② 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처리한다. 1. (생략) 2. 제1호에 의하여 신용도 판단정보를 조기해제한 채무관계자가 제74조에 의한 <u>기한의 이익 상실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해제를 취소하고 신용도 판단정보를 재등록한다.	<u>제75조</u>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사에 알리지 않은 재산의 회수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제75조(분할상환 중 발견재산에 대한 업무처리) ①분할상환(제71조제3항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제외) 중인 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 있는 재산을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고</u> 발견재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금액을 초과하는 회수실익가액 이상을 추가로 상환(분할상환 포함)하는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지</u> 아니하고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한다. 제77조(채무조정한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처리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의하여 신용도 판단정보를 조기해제한 채무관계자가 제74조에 의한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해제를 취소하고 신용도 판단정보를 재등록	

현행	개정안	비고
3. 재등록시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별지 제4호 서식] “<u>기한의 이익 상실 및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연체자용)</u>”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 “<u>기한의 이익 상실 및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u>”를 통보하도록 한다. 4. <u>기한의 이익이 상실된</u> 채무관계자가 제74조에 따라 <u>기한의 이익을</u> 회복하는 경우 재등록된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한다.	록한다. 3. 재등록시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공사 소정양식>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연체자용)” 또는 <공사 소정양식>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를 통보하도록 한다. 4.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u> 채무관계자가 제74조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를</u> 회복하는 경우 재등록된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한다.	

※ 내용 개정 조항 외 내규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비 조항은 전후대비표 기재 생략